

의안번호	2215999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1. 30.
추 계 번 호	26A0163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(제2호) “재생에너지”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아. <u>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 설비를 통하여 회수·이용하는 경우로서, 해당 히트펌프 설비가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(총 공급 열량/총 소비전력량) 2.875 이상 및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6조의4에 따른 성능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에너지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¹⁾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‘공기 중에 존재하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 설비를 통하여 회수·이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에너지’를 추가하는 내용임

1) 본 개정안은 김소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16000)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

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보급지원(설치비), 용자사업, 기술개발지원, 표준화, 해외진출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

※ [참고자료] 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사업 현황(전력산업기반기금)

-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히트펌프 설비를 통해 공기 중의 열에너지를 회수·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신설될 수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데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확대될 사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본 개정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」 (의안번호 2216000)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사업 현황(전력산업기반기금)

세부사업-내역사업 (코드)	내용	예산(백만원)	
		2025	2026
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(5202-303)	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	168,212	202,085
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(융자) (5202-304)	신·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·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·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	426,300	648,000
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 (5202-302)	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에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법정 의무 지출사업	34,072	5,060
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(5703-301)	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·연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자원안보에 기여	314,103	335,756
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 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 지원(R&D) (5202-323)	초대형 해상풍력 발전설비, 차세대 태양광 설비 등 신기술 개발성과의 보급을 위한 KS표준 개발,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및 국내기업의 국제표준 대응 지원	2,000	5,615
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(5202-325)	태양광 밀집지역 내 지속운전기능 구비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태양광 인버터 대상 성능개선	—	3,000

세부사업-내역사업 (코드)	내용	예산(백만원)	
		2025	2026
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 진출지원(5202-328)	- (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)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·중견 기업이 다변화하는 해외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출역량 강화 지원 -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,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, 해외진출지원센터, 에너지대전 개최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지원 - (해외타당성조사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- (상용화지원) 해외시장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실증사업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의 Track Record 확보 지원	6,195	8,247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